

UCP 해설

유 하상

제 6 주

UCP 제27조-32조

유 하상

제27조 무결함운송서류

제27조

■ 제27조 무결함운송서류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하자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조항 또는 단서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서 그 운송서류가 “무고장본선적재(clean on board)”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는 경우에도,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는 운송서류상에 보일 필요가 없다.

■ 제27조 해설

임의적인 무고장문언

운송서류의 무고장 문언을 의미하는 Clean이란 문언이 필수적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다는 문언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Clean이란 문언의 기재여부는 임의사항이 되었다

무고장 운송서류(제27조)

- * 물품 및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표시하는 부가조항이 없는 운송서류
- * Foul BL : 화물의 수량, 포장, 외관에 이상이 있음을 특별히 기재하고 있는 BL.
 - 10 bags torn
 - paint surface scratched

제28조 보험서류 및 부보

제28조

■ 제28조 보험서류 및 부보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a. 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와 같은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이들 대리인 또는 이들 대리업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보험업자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b.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원본은 제시되어야 한다.

c. 보험승인서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d. 보험증권은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있다.

e. 보험서류에서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보험서류의 일자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f. i. 보험서류는 보험다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이어야 한다.

ii. 보험담보가 물품가액 또는 송장가액 등의 비율이어야 한다는 신용장상의 요건은 최소 담보금액이 요구된 것으로 본다.

요구된 보험담보에 관하여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담보의 금액은 적어도 물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의 110%이어야 한다.

CIF 또는 CIP 가격이 서류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담보금액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요청되는 금액 또는 송장에 표시된 물품총가액 중에서 보다 큰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제28조 보험서류 및 부보

- iii. 보험서류는 위험이 적어도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수탁 또는 선적자와 양륙 또는 최종 목적지간에 담보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g. 신용장은 요구된 보험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하고 만일 부보되어야 하는 부가위험이 있다면 이것도 명기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usual risks)” 또는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 h. 신용장이 “전위험”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전위험”이라는 표제를 기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위험”의 표기 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 보험서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기된 어떠한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 i. 보험서류는 모든 면책조항(exclusion clause)의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
- j. 보험서류는 담보가 소손해면책율 또는 초과(공제)면책율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 제28조 해설

보험서류의 종류, 발행인, 제출통수(제28조)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보험회사, 보험 인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 부보각서(Cover Note) : 보험중개인이 발행, 원칙적으로 수리 거절됨
보험서류는 복본전통을 제시

부보 기산일자

* 원칙적으로 운송 서류상의 본선 적재일, 발송, 수탁일(dispatch or taking in charge)보다
늦은 일자가 표시된 보험 서류는 수리 거절

•선적일보다 늦은 일자의 보험서류의 수리 가능성

부보금액

* L/C와 동일 통화로 표시

* 부보 최저 금액

CIF, CIP 또는 지급, 인수, 매입 총 송장 금액 중 큰 금액의 110% 부보

■ 제28조 해설

부보범위, 조건(28조)

- * L/C상에서 요구되는 보험종류와 필요시 부담할 추가적인 위험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대로 수리
- * All Risk의 경우 특정 위험이 제외된다는 표시가 있을지라도 「ALL Risk」라는 표시, 약관이 포함된 서류는 수리
- L/C에서 "Usual Risks", "Customary Risks" 등 표현금지, 동 보험서류는 제시된대로 수리

* 부보조건

- ICC 구 적하약관 : A/R, W.A, FPA
- ICC 신 적하약관 : ICC(A), ICC(B), ICC(C)
- * 특정 위험 담보 경우 추가보험 필요
- War Risks
-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등

제28조 보험서류 및 부보

제28조

■ 제28조 해설

소손해 면책, 공제비율(동 내용 표시 서류 수리가능

- * 일정 비율 미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
- * Deductible Franchise
 - 일정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율을 면책
- * 3% 품목, 5% 손해발생 : $5\% - 3\% = 2\%$ 담보
- * Non-Deductible Franchise
 - 일정 비율 미만시는 면책
 - 동 비율 초과시는 전액 담보
- 3% 품목, 5% 손해발생 : 5% 담보

보험서류 발행자확대(수임자), 보험부보금액의 명시, 보험담보구간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임자(proxy)를 추가하였다. 특정사항에 대하여 서만 본인을 대리하는 수임자를 포함하였다. 즉, 종전의 보험자, 보험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외에도 수임자도 보험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험서류는 신용장상의 통화와 동일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던 조항에서 더 나아가 “보험서류에는 보험부보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새롭게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서류에는 보험자의 위험담보구간을 “최소한 보험서류의 담보구간은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 혹은 선적지에서 양륙 혹은 최종목적지까지 이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29조

■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 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 a.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이 제36조에 언급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제시를 받아야 하는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은 경우에 따라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
- b. 제시가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지정은행은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제시가 제29조 a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내에 제시되었다는 설명을 서류송부장 (covering schedule)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c. 선적을 위한 최종일은 제29조 a항의 결과로서 연장되지 아니한다.

■ 제29조 해설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및 단가의 편차

제30조

■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및 단가의 편차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 a. 신용장에 명기된 신용장의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약(about)” 또는 “대략(approximately)”이라는 단어는 이에 언급된 금액, 수량 또는 단가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b. 신용장이 명시된 포장단위 또는 개개의 품목의 개수로 수량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어음발행의 총액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수량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은 허용된다.
- c.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용장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족은 허용된다. 다만, 물품의 수량은 신용장에 명기된 경우 전부 선적되고 단가는 신용장에 명기된 경우 감액되어서는 아니되거나 또는 제30조 b항이 적용될 수 없어야 한다. 이 부족은 신용장이 특정 과부족을 명시하거나 또는 제30조 a항에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0조 해설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선적

제31조

■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선적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 a.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 b. 동일한 운송수단에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이들 서류가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또는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제시가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운송 서류의 어느 한 조에 증명된 대로 최종선적일은 선적일로 본다.

동일한 운송방식에서 2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그 운송수단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

- c. 2 이상의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를 구성하는 제시는 그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가 동일한 장소 및 일자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를 위하여 동일한 특송업자 또는 우편서비스에 의하여 스탬프 또는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1조 해설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선적

제32조

■ 제32조 할부청구 및 선적

제 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일정기간 내에 할부에 의한 어음발행 또는 선적이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고 어떠한 할부분이 그 할부분을 위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어음발행 또는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장은 그 할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제32조 해설

할부선적(제32조)

L/C조건에 명시된 할부 선적의 기간내에 선적, 어음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할부 선적분과 이후 선적분은 모두 무효가 됨



감사합니다.